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6년 1월 17일

나. 회부일자 : 1996년 1월 17일

3. 제안이유

- '95. 12. 29.일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규정과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와 중복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의 준용규정을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와 국내여비규정에서 중복되어 있는 조항 제2조(여비의종류), 제3조(여비정액), 제5조(이전비), 제6조(현장지도여비), 등을 각각 삭제
- 제7조(준용규정)을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와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구분하여 개정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95. 12. 29.)됨에 따라

현재 충청북도에서 적용시행하고 있는 여비지급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인
여비의 종류, 여비의 정액, 이전비, 현장지도 여비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국내여비규정과 일치되도록 조례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여비지급에 관련한 준용규정에 있어서도

국내여비규정의 준용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세분화하여 개정 또는
신설하여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과의 조문의 일치 및 조문적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첨 부

· 충청북도 여비지급 조례 개정조례안